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90974

[정보공개서 최초등록일]

2019.09.23

[정보공개서 최종등록일]

2024.12.03.

[족발곤]

정 보 공 개 서

[곤컴퍼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

[곤컴퍼니]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1599-6716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031)647-6582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1599-6716

목 차

-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 별첨 서류

- ※ 정보공개서 최초등록 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를 통한 검색까지는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에 최초 검색 시 당사의 브랜드가 검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십시오.
- ※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한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주 소			
곤컴퍼니	족발꾼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개인사업자	2019.04.16	방진배	1599-6716	031)647-6582
	법인등록번호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번호	498-19-00776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개인사업자로 당사의 업무 및 가맹사업 관련 특수관계인은 없습니다.					
상호	영업표지	특수관계인	주 소		
곤컴퍼니	족발꾼	※ 당사는 개인사업자 가맹본부로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방진배	1599-6716	031)647-6582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음과 같이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 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족발꾼』	족발전문 가맹사업
상 호	『족발꾼』 _____ 점	가맹사업자의 명칭
상표(서비스표)		출원일자: 2018.11.14. 출원번호: 4020180158014
		등록일자: 2019.10.04. 등록번호: 4015284090000 출원일자: 2020.03.11 출원번호: 4020200040868
		등록일자: 2021.06.24 등록번호: 4017441720000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년	82,182	8,652	73,529	251,284	4,169	4,089
2022년	85,882	11,470	74,411	215,954	424	536
2023년	125,161	39,427	85,734	225,494	5,430	5,280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방진배	대표	2019.05.10. ~현재	대표	가맹사업 경영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원 관련 정보는 해당 내용이 없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31일	1	0	0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명칭(상표)	권리내용	출원일자 및 등록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일자	소유자 (등록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가맹점 상호 및 간판디자인으로 사용(제11판 35류, 43류)	출원일자: 2018.11.14. 등록일자: 2019.10.04	출원번호: 4020180158014 등록번호: 4015284090000	방진배	20209.10.04

					
	가맹점 상호 및 간판디자인으로 사용(제11판 35류, 43류)	출원일자: 2020.03.11. 등록일자: 2021.06.24	출원번호: 4020200040868 등록번호: 4017441720000	방진배	2031.06.24
※ 당사의 지식재산권 [족발꾼]은 현재 2건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며, 2건 모두 특허청을 통하여 상표등록 출원과 등록까지 완료되었습니다. 이에 가맹점사업자의 안전한 가맹사업 용도로의 상표사용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관련 내용은 한국특허정보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I 가맹본부의 [족 발 곤] 가맹사업 현황

1. [족발곤] 가맹사업 시작일: 2019.01.20.(1호 가맹점 천안 청당점)

2. [족발곤]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의 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곤컴퍼니	족발곤	방진배	2019.01.20.~ 2024.04.10	경기도 평택시 서재로12, 2층
곤컴퍼니	족발곤	방진배	2024.04.11.~ 현재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3. [족발곤] 업종

영업표지	업종	
	대분류	소분류 (주요 상품)
족발곤	한식	족발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족발곤]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1.12.31.			2022.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11	10	1	9	8	1	10	9	1
서울	—	—	—	—	—	—	—	—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	—	—	—	—	—	—	—	—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1	1	—	1	1	—	1	1	—
경기	7	6	1	7	6	1	7	6	1
강원	—	—	—	—	—	—	—	—	—
충북	1	1	—	—	—	—	—	—	—
충남	2	2	—	1	1	—	2	2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최근 3년간 [족발곤]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년	14	2	2	4	3	10
2022년	10	1	1	2	-	8
2023년	8	1	-	-	3	9

☞ 당사의 가맹점 관련 상세 변동 내용은 당사에 비치될 점포목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족발꾼]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해당 가맹사업 외에 다른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
전체	9	786,629	21,632	1,159,635	40,282	546,734	9,362	1곳 작성 기준 미달 배제
서울	—	—	—	—	—	—	—	—
부산	—	—	—	—	—	—	—	—
대구	—	—	—	—	—	—	—	—
인천	—	—	—	—	—	—	—	—
광주	—	—	—	—	—	—	—	—
대전	—	—	—	—	—	—	—	—
울산	—	—	—	—	—	—	—	—
세종	1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곳 미만
경기	6	851,462	21,782	1,159,635	40,282	604,276	9,362	—
강원	—	—	—	—	—	—	—	—
충북	—	—	—	—	—	—	—	—
충남	2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해당 없음	5곳 미만
전북	—	—	—	—	—	—	—	—
전남	—	—	—	—	—	—	—	—
경북	—	—	—	—	—	—	—	—
경남	—	—	—	—	—	—	—	—
제주	—	—	—	—	—	—	—	—

☞ 당사의 가맹사업 [족발꾼] 관련 2023.12.31.까지 가맹점 수는 총 9곳입니다. 해당 가맹점 중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권장 기준 실제 영업 개월 수 6개월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는 곳은 8곳입니다. 이에 상기 표의 전체 가맹점사업자 연간 평균 매출액은 9곳이 아닌 실제로는 8곳을 통하여 산출된 추정 자료이기에, 실제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별 작성을 위한 권장 기준인 지역별 가맹점 수 5곳 미만의 경우에는 기재를 배제하였습니다. (매출액의 산정근거는 가맹점별 POS[Point of Sales]상의 매출액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중 가맹점 면적(㎡)은 전용 면적으로 구체화했습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 물품공급액, 시장현황, 가맹점주의 경영능력 등 다양한 외부적 요인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가맹사업법 제9조 제3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할 자료는 당사의 사무실에 비치할 예정입니다. 이후 귀하가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족발꾼』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 『족발꾼』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 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단위:일)
2023	9	1,254

☞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은 최초 가맹계약 체결 일자를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실제 영업 기간과는 상이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십시오.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족발꾼]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합계	-	-	3,067		(비공개)	 (비공개)
광고	소계	-	3,067		(비공개)	-
	TV	-	-	-	-	 (비공개)
	라디오	-	-	-	-	
		(비공개)		(비공개)		
판촉	소계	-	해당 없음		(비공개)	-
	-	-	-	-	-	-
	-	-	-	-	-	-

☞ 직전 사업연도 말 [족발꾼]과 관련하여 광고비 또는 판촉비로 사용된 금액의 상세 내용은 별첨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십시오.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평택대 지점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111-1	031-655-6192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가맹계약 체결 후 1일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계좌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면 됩니다. 자세한 예치방법은 국민은행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문의 전화(031-655-6192)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 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2.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범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 등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족발꾼]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족발꾼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족발꾼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협력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4,300	-	-	-	-
가맹비 (가입비)	11,0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가맹계약서 제14조 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상의 사유	가맹점 모집을 위해 소요된 실제비용	상표·상호·로고· 디자인·서 비스표 등 사용료, 점포 유지 관리비
교육비 (요리지도 등)	3,3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교육 시작 1일 이전에 계약 해지	교육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	-	-
계약이행보증금	2,000	계약체결일 다음날까지	가맹금 미지급, 본사가 공급한 물품 파손 등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부가세 포함)
합계	16,300(부가세 포함)
가입비	11,000(부가세 포함)
교육비	3,300(부가세 포함)
보증금	2,000(부가세 없음)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당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99㎡(30평)	126,500	4,217	-	-	당사의 주된 권장 평수
	82㎡(25평)	108,350	4,334	-	-	-
	132㎡(40평)	158,950	3,974	-	-	-
인테리어 (내부&외부)	협력업체	99㎡(30평):85,800 82㎡(25평):71,500 132㎡(40평):114,400	2,860	시공 시작 전일	공사 전 계약취소	-
간판 (내부&외부)	협력업체	99㎡(30평):8,800 82㎡(25평):7,700 132㎡(40평):9,900	99㎡(30평): 293 82㎡(25평): 308 132㎡(40평): 248	간판 주문과 동시	시공 전 계약 취소	-
주방설비 및 집기	협력업체	99㎡(30평):16,500 82㎡(25평):15,400 132㎡(40평):17,600	99㎡(30평): 550 82㎡(25평): 616 132㎡(40평): 440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
디스플레이/ 판촉홍보물	가맹본부	99㎡(30평):3,300 82㎡(25평):2,750 132㎡(40평):3,850	99㎡(30평): 110 82㎡(25평): 110 132㎡(40평): 96	발주와 동시	작업 전 계약취소	-
의·탁자	협력업체	99㎡(30평):6,600 82㎡(25평):5,500 132㎡(40평):7,700	99㎡(30평): 220 82㎡(25평): 220 132㎡(40평): 193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
홀 집기	가맹본부	99㎡(30평):필요 시	99㎡(30평):	발주와	납품 전	전단지 명함

및 비품	협력업체	별도 발주	해당 없음	동시	계약취소	, 발지, 앞치마(5개), 유니폼(5개) 포함
		82㎡(25평):필요 시 별도 발주	82㎡(25평): 해당 없음			
		132㎡(40평):필요 시 별도 발주	132㎡(40평): 해당 없음			
일반설비 및 집기	가맹본부	99㎡(30평):필요 시 별도 발주	99㎡(30평): 해당 없음	발주와 동시	납품 전 계약취소	-
		82㎡(25평):필요 시 별도 발주	82㎡(25평): 해당 없음			
		132㎡(40평):필요 시 별도 발주	132㎡(40평): 해당 없음			
최초 공급 원·부재료	가맹본부 외 6개 협력사	5,500	-	물품공급 2일 이전	상품 미 공급 시	-

□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별도비용: 냉난방기, 철거, 가스설비, 전기승압, 통신설비, 소방시설공사, 화장실공사, 외부 상하수도 공사, 어닝, 외장공사, 인허가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1. 관리 감독 준수 : 인테리어, 간판 등은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독창성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당사가 정한 매뉴얼과 지정한 업체를 통하여** 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설치 / 구매할 경우 당사는 가맹사업의 동일성, 품질수준 유지, 기술 구현 최적화를 위하여 귀하 점포의 실·내외 인테리어 디자인, 영업설비 / 집기 설치 등 최적의 가맹사업 환경 조성 및 제반 업무를 보조 및 감독할 수 있고, 귀하는 이에 대한 대가로 가맹계약 체결 시 기획 관리비로 가맹점 면적 기준으로 99㎡ 미만은 일금일천육백오십만원 (₩16,500,000/VAT포함)을, 99㎡ 이상은 일금이천이백만원정(₩22,000,000/VAT포함)을 공사 착수 전일까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며, 점포 운영 중 환경 개선을 하는 경우에도 이와 동일합니다. (기획 관리비는 공사가 완료된 경우 반환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또한 가맹사업 관련 가맹점 설치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2. 필수 구입 내역 : 장비 및 초도물품 등은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동일성 유지를 위해서 당사에서 지정하는 업체를 통하여 구입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가 지정하는 일부 품목을 귀하가 자체 구입 시에도 **가맹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사전 당사를 통한 승인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3. 그 밖의 영업 신고, 어닝, 냉난방기, 철거비용, 익스테리어, 사업자 등록발급, 전화 개설, TV 설치, 후드 실외 배관공사, 가스공사, 오픈행사, 전기승압공사 등에 따른 비용은 귀하가 별도 부담하여야 합니다.

※ 위의 모든 비용은 시공 및 구입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공하지 아니 하거나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력업체, 또는 귀하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반환조건에 따라 반환될 수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주체 : 가맹점사업자 지원 : 당사 점포개발팀	담당자 배정 → 상담을 통하여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파악 → 현장 조사 등 시장분석 → 최적의 입지도출 → 가맹희망자에게 동의여부를 구함 ※ 가맹희망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새로운 입지를 정할 수 있으나 영업이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미성년자가 아닐 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 부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VAT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 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상품광고 및 홍보비용	가맹본부	광고 분담기준에 의함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상품광고 및 홍보 미 실시 시	광고비 및 홍보비용으로 사용된 경우	p.25 광고 및 판촉비용 항목 참고
판촉분담금	가맹본부	판촉진행 시 요청될 실제금액	명세서 수령 후 7일 이내	판촉활동 미 진행 시	판촉비로 비용소용	판촉행사 시 협의로 금액 및 세부항목 확정
교육훈련비	가맹본부	실비	교육 실시	교육	교육 실시 후	교육 필요시

영업표지 변경 등에 따른 간판변경 비용	협력업체	실비	10일 이전 간판 변경 후 2일 이내	미실행 기한 전 취소	취소기한 경과	지급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로열티	가맹본부/ 족발꾼	33만원	익월5일	계약해지	경과기간	-
점포환경 개선비용	협력업체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시공시작전일	공사 전 계약취소	취소기한 경과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 한 지원 - 참고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20%	-	지급기일 의 다음날부 터 지급하는 날까지	-	연체대금의 채권상환은 비용, 이자, 선 발생채권 순으로 상계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3)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점과 가맹본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감독 항목	내 용	시기	비고
재고관리	실재재고 수량을 조사하여 장부상 재고와 비교	분기별 1회	-
회계처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 조사 실시	1년 1회	-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는 갱신 가맹비로 일금오백오십만원정(₩5,500,000/VAT포함)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면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 귀하가 운영하는 『족발꾼』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당사에 서면을 통한 청구와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은 양수인은 **1개월 이내**에 당사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에 따른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 과정에서 양수인은 가맹비 **일금오백오십만원정(₩5,500,000/VAT포함)**과 교육비 **일금삼백삼십만원정(₩3,300,000/VAT포함)**, 계약이행보

증금 일금이백만원정(₩2,000,000/VAT없음) 부담하여야 한다.

☞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양수인은 양도 등에 따라 당사에 초래된 가맹비, 개점 전 교육비, 계약이행보증금, 양수도 관련 제반행정비용 등의 부담과 함께 가맹점 운영 관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 위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당사에 완전한 계약기간으로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경우, 양수인은 당사와 신규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의 경우 양수인은 당해 다른 신규 가맹점사업자에 준하는 조건으로 그에 해당하는 가맹금 등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의 기간이 만료(종료)되거나 해지되었을 경우 “족발꾼”임을 알 수 있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7 일 이내로 철거하여야 합니다. 또한 전화번호 등록(114 등록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내 지역정보) 및 기타 홍보사이트도 삭제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의 기간 만료(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이내로 가맹본부의 영업표지를 철거하지 않고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침해일 익일부터 손해배상예정액으로 1 일당 (50 만원)을 가맹본부에게 지불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매장운영에 관한 모든 관계서류(계약서, 매뉴얼 등)를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는 계약 유효기간 동안이나 혹은 종결 후에도 경쟁 관계에 있는 자에게 영업내용이나 고객을 넘겨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물품의 오·훼손 등 관리상태, 유통기한 등을 고려하여 가맹본부와 협의하여 공급받은 물품의 일부를 반품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이 해약 내지 종료되었을 때에는 가맹점사업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채무 전액을 즉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미지급 채무의 경우 계약이행보증금에서 차급하여 환급할 수 있습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 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족발꾼]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지정된 내용과 경제적 이익 수취는 없습니다.

명칭	관계	경제적 이익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명칭	경제적 이익의 내용		비고
-	-	-	해당 없음	해당 없음	2023년 기준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1) 당사는 [족발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 2) 당사가 [족발꾼]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이 지정된 내용과 경제적 이익 수취는 없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족발류	왼쪽에 기재된 이외의 제품을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구두 경고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냉채족발			
불족발			
보쌈류			
막국수			

- ☐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거래 상대방	제한받는 상품·용역명	제안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경쟁업체	당사가 지정한 상품·용역 및 당사 또는 당사의 공식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제한된 거래상대방에게 무상지원 공급 및 판매금지	1회 위반: 구두 경고	-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2회 위반: 2회 이상 서면 시정 요구 3회 이상 위반: 계약 해지	-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고
족발	33,000	본사공문발송	-
냉채족발	33,000		
불족발	33,000		
보쌈류	33,000		
막국수	12,000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족발, 보쌈 등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종	족발꾼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과 변경 가능성 및 그 사유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거리기준	반경 500m	가맹계약서별지에 영업지역 표시

※ 단, 특수상권(백화점, 대형마트, 대형 쇼핑몰 등)의 경우에는 일반 매장(로드매장)의 영업지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 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역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족발꾼]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족발꾼』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영업표지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가맹점	-	-	해당 없음
대리점	-	-	
일반소매점	-	-	
기타	-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구분	유통업체명	주소	취급품목	가맹점과의 구분
온라인	-	-	-	해당 없음
홈쇼핑	-	-	-	
전화권유판매	-	-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 없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해당 영업표지의 국내 판매 매출액 중 온라인,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85%	15%	0%	0%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해당 영업표지의 전체 상품 수 중 가맹점 전용상품 수의 비중 및 온라인 전용상품 수의 비중

연도	가맹점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0% (해당 없음, 가맹점과 직영점 판매상품 동일)	0%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족발꾼]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 부터 [2]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가맹사업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순 서	기간(계약만료일: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11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11조 2항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11조 2항
○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11조 2항
○ [족발꾼]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11조 2항
○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11조 2항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영업표지의 사용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2조 1항

○ 영업거점지역의 설정 내용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조 1항
○ 가맹점사업자의 영업활동 조건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조 1항
○ 실내장식, 점포확장/축소 및 이전, 외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12조 1항
○ 교육, 훈련, 경영지도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조 1항
○ 영업비밀을 외부에 유출 및 누설하는 경우	12조 1항
○ 영업의 양도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12조 1항
○ 영업상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가맹본사에게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2조 1항
○ 고의 또는 과실로 가맹본사의 명성에 악영향을 미치거나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저해할 경우	12조 1항
○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지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오픈을 하지 않는 경우	12조 1항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1.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12조 2항
2.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정지된 경우	12조 2항
3.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12조 2항
4.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12조 2항
5.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2조 2항
6.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한다.	12조 2항
7.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12조 2항

8.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12조 2항
9.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12조 2항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환매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30일 가량 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5일 요)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에는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 가맹계약일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요될 경우에는 비용 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본 계약기간 중 가맹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3개월 이전에 사전 가맹본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맹본사의 승인을 받은 양수인이 가맹사업자의 잔여 계약(갱신요구)기간을 인정받는 양수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가맹본부에게 일금오백오십만원정(₩5,500,000/VAT포함)과 교육비 일금삼백삼십만원정(₩3,300,000/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 일금이백만원정(₩2,000,000/VAT없음)을 납입하고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개점 전 교육을 반드시 이수 받아야 한다. 다만, 양수인이 기존 가맹사업자의 잔여 갱신요구기간이 아닌 갱신요구기간(10년)을 새롭게 부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에게 가맹비 일금일천일백만원정(₩11,000,000/VAT포함), 교육비 일금삼백삼십만원정(₩3,300,000/VAT포함), 계약이행보증금(200만원/VAT없음)을 납입하여 신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양도인은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급의무 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한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운영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개시 후 3월내 가맹본부에 통지 시	모든 권리의무	앞 내용을 참고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	-	-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협의로 결정	-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 ☐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귀하의 영업지역을 포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인접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당사의 허락 없이 귀하 및 귀하가 제3자로 하여금 [족발꾼]과 동일한 업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을 포함한다)의 운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업금지 규정은 계약해지 또는 종료 이후에도 최장 1년간 현 가맹점과 동일한 업종으로의 경업을 금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족발,보쌈등을 육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외식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당사 담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요)→허가여부 통지→완료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족발꾼]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오전 10:00 ~ 자음	월 26일 이상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 해지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고
매장 청결(4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
친절도(5항목)	담당자 매장 양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완료	수시	S/V	-
품질 관리(7항목)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수시	S/V	-
당사는 감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가맹점 관리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본 표는 감독이 끝난 후 귀하의 서명을 받아 가맹본부와 귀하가 각 1부씩 보관하게 됩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분담 기준

당사는 [족발꾼]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광고 성격	부담비율		분담 절차	비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및 홍보 전체 행사	상품광고	총 광고비의 50%	총 광고비의 50%	당사의 광고기획안 전달 →가맹점사업자 분담비율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계약서 제6조 제8항 참고
	상품광고+가맹점모집 광고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가맹점 모집광고	총 광고비의 100%	총 광고비의 0%	당사의 판촉기획안 전달 →가맹점사업자와 주요 내용 협의로 분담비율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가맹점 개별광고 (직접 sns마케팅 등)	총 광고비의 0%	총 광고비의 100%		
판촉 전체 행사	판촉행사	판촉관련 내용과 분담비율은 행사 전 협의로 결정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경품·기념품 제 작은 가맹점사업자가 100% 부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의 할인비 용과 직접 제공 경품 비 용은 가맹점사업자가 100%부담(판촉관련 물품 의 디자인 요소와 제작기 준은 당사의 허가 및 배 포 기준 동참 필요)		당사의 판촉기획안 전달 →가맹점사업자와 주요 내용 협의로 분담비율 산정 →1개월 전 분담금통지서 발송 →수령 후 7일 이내 지급 -	가맹계약서 제6조 제9항 참고
	할인카드· 멤버스· 제휴서비스	해당 없음			

※ 2022년 07월 05일부터 개정 시행된 가맹사업법 및 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따라서 가맹본부

는 가맹점사업자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광고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하여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전 광고 100분의 50 / 판촉행사 100분의 7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판촉행사의 경우 해당 판촉행사의 비용 부담에 동의하는 가맹점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 광고와 판촉행사 등은 당사와 귀하의 성장과 발전이라는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한 것입니다.

※ 당사의 광고 관련 비용 부담 기준은 전국광고 기준이며 지역단위 광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전국광고 비용 부담액은 가맹점사업자간 균등비율로 합니다. 관련 정책은 당사의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1년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서 제 15 조 참고)

1) “을”이 계약해지·종료 시 제 13 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 그 의무불이행의 기간에 대하여 1 일 (50 만원)의 지체배상금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을”이 “갑”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계약체결 후 영업개시 전 변심에 의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3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 “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중단하거나 “갑”의 동의 없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갑”에게 위약벌 (3,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3) “을”이 제 6 조 제 10 항을 위반하여 경업금지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3,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4) “을”이 제 9 조를 위반하여 “갑”의 영업비밀 및 영업노하우를 누설 및 유출할 경우 “을”은 “갑”에게 위약벌 (3,0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을”이 제 6 조 제 2 항 제 1 호(물품의 조달과 관리)를 위반하는 경우 “갑”에게 위약벌 (500 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본 조의 경우 “갑”의 지급요청일에 “을”이 지체배상금 및 위약벌을 지체하거나 정보공개서 및 가맹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대금에 대한 지급기간을 경과하면 미지급액에 대하여 “갑”에게 지급기간 경과 일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을”은 연 이율 (20%)의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7) “을”의 귀책사유 또는 “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①항 내지 제⑥항에 의한 위약벌 이외에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패소한 자는 소송 등으로 소요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및 실제 지출한 합리적인 수준의 변호사보수를 승소한 상대방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8) “을”은 “갑”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갑”에게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Ⅵ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①	소요비용 ^②
합계		47일 내외	8~9페이지참고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47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46~45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34~31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30	
가맹금 예치	- 국민은행에 가맹금 예치	D-29(1일)	8~9페이지참고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D-27~25(3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24(1일)	8~9페이지참고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24~5(20일)	8~9페이지참고
교육 실시	- 점포운영교육 실시	D-7~4(3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대화과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구분	내용	비고
점포환경개선 사유	-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지급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에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 (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본부부담	문의: 운영팀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가맹금에 포함된 통상의 경영지도 비용을 초과한 부분에 한함)	문의: 운영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족발꾼]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족발꾼] 가맹점사업자의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돕기 위한 별도의 경영상 지원활동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가맹사업 경영 초기로 아직 관련 지원 결정 내용은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 내용	비고
조기안정화 자금지원	-	-	-	해당 없음	-
매출부진개선 경영지원	-	-	-	해당 없음	-

Ⅷ.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족발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영업중 인지해야할 사항 제품의 관리법 출판리 방법 창업에 대한 마인드교육 본사규정 및 방향	실습 및 점포 요리지도	가맹점오픈 7일전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개발 가격변동 및 규정변경시 점주 집체교육의 필요성시	본사교육장 집체교육	반기별 및 필요시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족발꾼]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비고
신규 교육	5일(35시간)	3,300	-
보수 교육	1일(7시간)	550	매년 필수적으로 이수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 25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기한 내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점을 부여받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IX. 교육 및 훈련에 대한 설명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직영점명	주소
1	경기	평택 용죽점	경기도 평택시 용죽5길 6-31, 1층
-	-	-	-
-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년, 개월)

2023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5년 1개월(1,856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2023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산정 기준
1,123,118	직영점 포스(POS) 자료 기준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 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당사의 홈페이지 또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 (<http://franchise.ftc.g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첨 1] 족발꾼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원·부재료 리스트

족발꾼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원·부재료 내역(2024.06.01. 기준)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_1]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_2]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주방설비 및 집기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_3]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주방설비 및 집기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당사의 가맹점운영 필수 주방설비 및 집기 내역은 당사의 경영환경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관련 단가 등 세부적인 내역은 가맹상담 시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별첨 2_4]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주방설비 및 집기 내역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_5]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설비 등 내역/공급방법/공급업체

가맹점운영 필수공급 비품/의·탁자 리스트/판촉홍보물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가맹희망자의 수령 자필확인서

본인(가맹희망자)은 가맹본부(곤컴퍼니)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약한다.([]안 자필작성)

① 「곤컴퍼니」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시 : 20 년 월 일

② 「곤컴퍼니」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장소 :

③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_____

④ 「곤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등록)한 일자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⑤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⑥ 정보공개서의 제공 사실 : 아래사항 중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한다.

- () 직접 제공함

- () 전자우편으로 송부함(전자우편 주소 : _____)

⑦ 가맹계약자_____는 「족발꾼」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과 사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족발꾼」의 정보공개서의 사용 용도를 「족발꾼」의 가맹사업계약에 관한 검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족발꾼」의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서의 사용과 타인에게의 양도로 인하여 「족발꾼」의 가맹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을> 가맹희망자

성 명: _____(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번호: _____

주 소: _____

<갑> 가맹본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상 호 : 곤컴퍼니

대 표 : 방진배 _____(서명 또는 기명날인)

가맹희망자의 수령 자필확인서

본인(가맹희망자)은 가맹본부(곤컴퍼니)로부터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서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확약한다.([]안 자필작성)

① 「곤컴퍼니」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일시 : 20 년 월 일

② 「곤컴퍼니」가 가맹계약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장소 :

③ 가맹희망자의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성 명: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_____

④ 「곤컴퍼니」가 정보공개서를 작성(수정/등록)한 일자 : 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⑤ 정보공개서의 주요 목차 : 가맹본부의 일반현황,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교육, 훈련에 대한 설명 등

⑥ 정보공개서의 제공 사실 : 아래사항 중 제공 방법을 선택하여 (○) 표시한다.

- () 직접 제공함

- () 전자우편으로 송부함(전자우편 주소 : _____)

⑦ 가맹계약자 _____는 「족발꾼」의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후 그 내용과 사용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기로 합의한다.

- 「족발꾼」의 정보공개서의 사용 용도를 「족발꾼」의 가맹사업계약에 관한 검토용으로만 제한적으로 사용하기로 하며,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 「족발꾼」의 정보공개서를 임의로 타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며 정보공개서상의 제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유지하며 타인에게 유출하지 아니한다.

- 정보공개서의 사용과 타인에게의 양도로 인하여 「족발꾼」의 가맹사업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민, 형사상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을> 가맹희망자

성 명: _____ (서명 또는 기명날인)

주민번호: _____

주 소: _____

<갑> 가맹본부

주 소 : 경기도 평택시 비전5로 7-1, 5층 504호

상 호 : 곤컴퍼니

대표이사 : 방진배 _____ (서명 또는 기명날인)

[별첨 5]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업 중인 가맹점을 아래 표와 같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합니다.

가맹희망자 장래 점포 예정지

No.	상호	소재지	전 화 번 호
1			
2			
3			
4			
5			
6			
7			
8			
9			
10			

※ 정보공개서 제공시점에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가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의 수가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를 작성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의거)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였으며,
가맹희망자는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맹본부: [곧컴퍼니] 대표 방진배 (인)

가맹희망자: 서명 또는 (인)

- [별첨 6_1]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별첨 6_2]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별첨 6_3]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별첨 6_4]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별첨 6_5]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별첨 6_6] 가맹본부 재무정보_2021년/2022년/2023년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